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1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18년 11월 13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8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위원회(2018. 12.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김인문)

가. 제안이유

- 어린이·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지역사회, 영등포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추진하는 영등포혁신교육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용어정의 신설 및 적용범위 구체화(안 제1조의2, 안 제2조)
- 보조금 지원 대상을 개인·단체로 구체화(안 제5조)
- 혁신교육운영협의회로 명칭 변경(안 제6조)

- 수당 지급대상에 분과협의회 위원 추가(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광목)

-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우리구와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지역의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조의2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혁신교육사업의 적용범위를 공교육 혁신사업, 마을과 학교 협력 지원 사업,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혁신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평가·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를 “혁신교육운영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분과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혁신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4. 심사결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9 호
----------	--------

제출연월일: 2018. 11.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시, 교육청, 지역사회, 영등포구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추진하는 영등포혁신교육 지원에 필요한 대상 및 사업범위,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
- 나. 용어정의 신설 및 적용범위 구체화(안 제1조의2, 안 제2조)
- 다. 보조금 지원 대상을 개인·단체로 구체화(안 제4조)
- 라. 혁신교육운영협의회로 명칭 변경(안 제6조)
- 마. 분과협의회 위원 수당 지급규정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인권·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 라. 입법예고(2018. 10. 18. ~ 11. 7 /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할구역 내”를 “관내”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그 연령기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2. “혁신교육”이란 영등포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의 주체들이 참여와 협력으로 다양한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며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영등포구가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관·학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혁신교육사업의 적용범위) 혁신교육사업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원 사업
2. 지역과 연계된 학교교육 지원 사업
3.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4. 교육부·시 및 시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연계사업

5. 그 밖에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혁신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 지원을 위하여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계획(이하 “혁신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혁신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와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치원·각 급 학교의 장과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로 한다.

제5조 중 “교육지원사업”을 “제4조에 따른 지원”으로, “지원계획”을 “혁신교육계획”으로 한다.

제6조 제목 “(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혁신교육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을 “다음”으로, “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를 “혁신교육운영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원계획”을 “혁신교육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 교육발전”을 “혁신교육”으로 한다.

제13조 중 “실무협의회”를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지원계획”을 “혁신교육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시교육청 및 지원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할구역 내 각 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제1조(목적) ----- ----- ----- 관내 ----- ----- ----- -----.</p> <p>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그 연령기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2. “혁신교육”이란 영등포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의 주체들이 참여와 협력으로 다양한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며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영등포구가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관·학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제2조(혁신교육사업의 적용범위) 혁신교육사업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원 사업
2. 지역과 연계된 학교교육 지원 사업
3.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4. 교육부·시 및 시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연계사업
5. 그 밖에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혁신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 지원을 위하여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계획(이하 “혁신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혁신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2. 지역과 연계된 학교교육 지원사업
3. 교육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과 연계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치원,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보조금의 평가, 관리) 구청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교육 협력 및 지

자 할 때에는 시와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금의 평가, 관리) -----
---제4조에 따른 지원-----
-----혁신교육계획-----
-----.

제6조(혁신교육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 다음 -----

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3. (생략)
4. 그 밖에 구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협력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장학사 및 학교의 장이 추천한 교사를 구 교육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집행에 대한 자문
2. 구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간 협력사업 발굴
3. 4. (생략)

----- 혁신교육운영협의회 -----
-----.

1. 혁신교육계획 -----

2. 3. (현행과 같음)

4. ----- 혁신교육 -----

제13조(수당 등) -----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

-----.

제14조(교육협력관) -----

-----.

1. 혁신교육계획 -----

2. --- 시교육청 및 지원청 -----

3. 4. (현행과 같음)